

해외지점 설치(변경) 신고서				처리기간		
신청인	상 호	(인)	대 표 자			
	사업자(주민)번호		법 인 등 록 번 호			
	주 소 ( 소 재 지 )	(주소) (전화번호)	(e-mail)			
	업 종		담 당 자			
	기 업 규 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				
신청내역	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				
	지 점 명	(국문) (영문)				
	소 재 지	(국가명) (세부주소)				
	업 종 코 드	(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)				
	주 재 원 수	본국파견 :           명, 현지채용 :           명				
	설 치 사 유					
	변경사항	내 용				
사 유						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						
				년	월	일
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귀하						
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.			신 고 번 호			
			유 효 기 간			
				년	월	일
				신 고(보 고) 기 관 :		(인)



## 사후관리 유의사항

- 가. 해외지점의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점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완료 보고를 할 것.
- 나. 해외지점의 영업기금보유,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,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행의 사후관리를 받을 것
- 다. 해외지점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및 처분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.
- 라. 국내 항공·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.
- 마. 해외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당행에 보고할 것.
- 바. 해외지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점의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, 재산처분명세서, 외국환 매각증명서류를 제출할 것. 다만,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,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사.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보고서(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서 포함, 별지 지침서식 9-22호)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제출할 것.

